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1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31.

발 의 자: 김도읍・김태흠・구자근

태영호・추경호・이 용

한무경 • 권명호 • 김정재

조수진 · 정운천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이와 관련된 취급자,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·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명령 또는 직접 조치(이하 "조치등"이라 함)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며, 조치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,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

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2조).

법률 제 호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과 관련된"으로, "취할 수 있다"를 "취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완·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령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유의물질에 대한 조치 및 조치내용·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
례)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2조(유의물질에 대한 조치) ① 제22조(유의물질에 대한 조치)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우 이와 관련된 취급자, 제조업 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 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당 사실과 관련된-----보완・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 치를 명하거나, 직접 관련 조치 를 취할 수 있다. ----취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에 따라 보완・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령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해당 조 치의 내용 및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 다.